

Together Further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함께, 멀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작성내용 기준일: 2019. 7. 19

가족친화경영: 경영지원본부 인사부(02. 6908. 8644)

한국재정정보원

가족친화제도 안내

함께하는 육아로
mom
편한
직장만들기

직원들의 행복, 가족친화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우리원 가족친화 규정 및 제도

- 1. 임신 03
- 2. 출산 04
- 3. 육아 06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가족친화제도

- 1. 임신·출산 09
- 2. 양육·보육 12

우리원 가족친화 규정 및 제도



1 임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복무규정」 제23조(출산전후휴가) ⑦

- 급여 근로시간 단축시간 전액 지급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신청

태아검진휴가

임신 중인 직원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태아검진시 유급휴가 사용 가능

「복무규정」 제2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이후 1주마다 1회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휴가 ▶ 휴가조회 및 신청

초과근무금지· 근로전환

임신 중인 직원은 시간외근로를 하여서는
안되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가능함

「복무규정」 제13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등) ④,
「복무규정」 제23조(출산전후휴가) ⑥

모성보호 간담회

소속 부서장은 직원의 임신 사실과 주의사항을
부 내에 전파(간담회)

인사부-내부결재-975 「19년 가족친화경영 계획(안)」

- 가족친화경영 리플렛 제공 부서장이 리플렛 제공
- 아이지키미 소속 부서장을
'아이지키미'로 임명
- 임신부용 목걸이 지급 임신부 보호를 위한
분홍색 목걸이 지급

2 출산

출산전후 휴가

임신중의 여성직원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신 : 120일)의 출산휴가 사용가능

「복무규정」 제23조(출산전후휴가) ①

- 이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다태아 임신 :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급여 최초 60일(다태아 임신 : 75일) 유급,
잔여 30일 무급*
* 고용보험에서 지급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휴가 ▶ 휴가조회 및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내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10일의 휴가 사용가능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①

-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휴가 ▶ 휴가조회 및 신청

초과근무 제한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복무규정」 제13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등) ③

수유시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를 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음

「복무규정」 제8조(근무시간) ③



출산 축하선물 지급신청

출산한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 축하선물 신청 가능

인사부-내부결재-975 「'19년 가족친화경영 계획(안)」

- **지급내용** 축하선물 목록(각 20만원 상당) 중 하나를 선택
- **신청방법** 출산확인 증빙자료 제출 후 담당자*에게 개별 신청

* 담당자 인사부 김재윤 사원

02-6908-8644, 010-7463-9862

축하선물 목록(택 1)

- 1 [야마토야] 뉴마터나 유아식탁의자
- 2 [파크론] 아기돼지 푸어 버블업 놀이방매트 고급초대형 40T
- 3 [에르고베이비] 4포지션케어360세트
- 4 [레이퀸] 젓병소독기 JHS-400S + [레이퀸] 육아욕조세트
- 5 [다이치] 듀웰S ISOFIX 오가닉 카시트(차콜)
- 6 [미고] 미니플러스4 유모차



3 육아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인사규정」 제61조(휴직) ③

• 육아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개인사정으로 자동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로 함

「복무규정」 제23조2(자동육아휴직)

• 신청방법

「복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후 인사부 제출



• 단, 다음의 경우 육아휴직 적용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 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3개월간 지급

-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음

「복무규정」 제9조(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함,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연장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육아휴직과의 혼합** 육아기 단축시간과 육아휴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신청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⑥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②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③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신청방법**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근태 ▶ 휴가 ▶ 휴가조회 및 신청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가족친화제도

*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기준



1

임신·출산

임신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5회)
1회당 최대 50만원(단,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1인당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임신 주차 ~ 12주까지(임신준비중 기혼자 1회
1개월분 지급가능)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취약계층 임산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6종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월1 ~ 2회 배송)
및 가정방문 식생활관리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직장인 임산부

지원내용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9시 ~ 13시)
| 임신 초기검사, 철분제 제공 등(자치구별 상이)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대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초기검사(혈액, 풍진, 매독, 간염 에이즈검사 등),
기형아 검사(쿼트)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출산준비, 모유수유 등)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 가구

지원내용 | 자치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지원

담당부서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보건소

산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단태아, 쌍태아,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자녀에
따라 최소 5 ~ 최대 25일간 지원
(세부제공기간 및 지원금 확인필요)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산후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37주 미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지원내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정 또는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 | 지원범위
일부분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 영유아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 선별검사 및 2차 정밀검사 비용 지원
- |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등 지원
-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 대상 만12세 이하 영·유아 아동
- 지원내용 | 위탁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17종 무료접종 실시
- 담당부서 주소지 관할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 생후 4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총 7회
(4·9·18·30·42·54·66개월)실시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검진, 취학 전 준비 등)
- | 검사결과 발달장애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최대 20 ~ 40만원)
-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양육비용
경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 ~ 5세 영유아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계층에 보육료 지원

| 연령과 유형(종일반, 맞춤반)에 따라 지원금 상이
(0 ~ 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담당부서 거주지동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 월 10 ~ 20만 원 지원

담당부서 거주지동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고객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제공 (육아용품, 대형마트,
문화시설, 기타서비스 등)

담당부서 가족담당 2133-5177

자동차 취득세감면

대상 입양아 포함,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 자녀 양육용 자동차(7 ~ 10인승) 1대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 취득세의 15% 과세)
(6인 이하의 취득세액 140만원 경감)
※ 가구당 1대 차량에 한함

담당부서 세무과 2133-3420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할인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보호자가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영유아 단독승차 시 초등학생요금 적용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14

임산부·유아동승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지원내용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임산부 수첩소지 등)
및 유아 동승시 “요일제 제외증명서”발급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14

육아 인프라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4개소 이상 설치

| 2019년 기준 1,600개소 확충

|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희교실, 민간매입 등
다양한 방식 추진

담당부서 보육담당 2133-5100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내용 |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
(인건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과 운영기준 적용

담당부서 보육담당 2133-510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영유아플라자(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
보육정보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정보 상담 등)를
통합하여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담당부서 | 보육담당 2133-5114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서울상상 나라

지원내용 |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가족문화공간 조성,
가족과 영유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일일, 정기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 보육담당 2133-5113

365일 열린어린이집

지원내용 | 시간연장, 휴일, 24시간보육 구분 없이
365일 통합보육서비스 제공
6개월 ~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 이용 가능,
1회 최소 3시간 ~ 최대 24시간, 월 최대 6일까지 가능

담당부서 | 보육담당 2133-5116

시간 연장형어린이집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
만 0-5세 영유아(17:00 ~ 24:00), 월 60시간 한도

- | 시간연장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아동(19:30 ~ 최대 24:00까지 연장)
- | 24시간
야간경제활동 종사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보육아동(24시간 및 야간 19:30 ~ 익일 07:30까지 이용)
- | 휴일보육
만 0-5세 영유아(일요일, 공휴일 07:30 ~ 9:30 이용)

담당부서 | 보육담당 2133-5104

돌봄 지원



종일제돌봄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부모 등

지원내용 | 사업시행

25개구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요금

시간당 9,650원(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시간 이내
최대 75% 지원)

| 서비스내용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이유식,
위생관리 등 영아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거주지동 주민센터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시간제돌봄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부모 등

지원내용 | 사업시행

25개구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요금

시간당 9,650원(일반형), 12,550원(종합형)
(소득기준에 따라 연 720시간 이내 최대 85% 지원)

| 서비스내용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임시보육,
등하교(원), 놀이활동 등 제공

*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추가 제공

담당부서 거주지동 주민센터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놀토 프로젝트

대상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지원내용 | 주말활동 관련기관 및 시설별 프로그램 제공

| 체험활동 프로그램, 취약 아동청소년 돌봄 교육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문화예술
할인 혜택 제공

담당부서 청소년 정책과 2133-4112